

#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전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※ 모든 서류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[2022.2.28(월)] 이후 발행분에 한함, '전체포함' 또는 '상세'로 발급  
 ※ 아래 서류 외 사전당첨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사전당첨자 자격요건 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	본인	당사 현장접수처 비치, 무주택 입증서류(사전당첨자 자격요건 서약서로 대체)	
	○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. 용도: 주택공급신청용 ※ 단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	
	○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※ 재외동포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	
	○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본인	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 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	
	○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본인	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,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	
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"상세"로 발급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)	
	○	청약통장순위(가입) 확인서	본인	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)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(가입) 확인서 발급(단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) 인터넷 청약(청약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	
	○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- 주민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까지	
	○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	
해외 근무자 (단신 부임)	○	복무확인서	본인	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(군 복무기간 명시) -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	
	○	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	본인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7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, 파견 및 출장명령서</li> </ul> </li> <li>•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</li> </ul> </li> <li>• 근로자는 아니나, 업무 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(※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)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</li> </ul> </li> </ul>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	
	○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세대원	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,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 미성년 자녀 모두 제출</li> <li>- 주민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</li> </ul> ※ 공급신청자의 해외 체류증인 기간 내 세대원의 동일 국가 체류여부 확인을 위하여 여권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	

#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전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※ 모든 서류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[2022.2.28(월)] 이후 발행분에 한함, '전체포함' 또는 '상세'로 발급  
 ※ 아래 서류 외 사전당첨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신혼부부 특별공급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혼인신고일 확인,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"상세"로 발급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 전원 제출 - 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/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
	○	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) [아래 신혼부부 ·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]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(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전 자녀를 출산한 경우
		○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함)
		○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당사 현장접수처에 비치
	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입양의 경우
		○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세대원	당사 현장접수처에 비치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
		○	부동산소유현황 (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)	본인 및 세대원	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[발급기관]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 <a href="http://www.iros.go.kr">www.iros.go.kr</a> 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"부동산 소유 현황" (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) 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※ 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 - 토지 :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- 개별공시지가 조회 후 해당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- 공동주택/단독주택 :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- 공동주택가격 열람/단독주택가격 열람 - 기타 건축물 : 위택스-지방세정보-시가표준액 조회
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		○	무주택 소명서류	해당 주택	-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-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- 소형 · 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(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, 건축물관리대장,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) 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○	당첨사실 소명서류	본인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※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.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), '본인 발급분'에 한함. 단,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○		위임장	본인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당사 현장접수처에 비치
	○		대리인 신분증, 인장	대리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※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
#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전당첨자 소득증빙 서류

※ 모든 서류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[2022.2.28(월)] 이후 발행분에 한함

※ 아래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(예시 : 출산휴가, 육아휴직 등) 명시

※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

건강보험	해당 자격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직장 가입자	근로자	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(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)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	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
		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	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/ 세무서
		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/ 세무서
	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  -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 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사)	- 해당직장
지역 가입자	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	- 세무서
		신규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본)	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 관리공단 또는 세무서
		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① 사업자등록증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본)	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 관리공단 또는 세무서
		법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부등본	① 세무서 ② 등기소
	보험모집인 /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 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	① 해당직장/ 세무서 ② 해당직장
	국민기초생활 수급자	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- 주민센터
	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사(직인날인) ②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사가 없는 경우 :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	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 관리공단
	무직자	- 비사업자 확인각서(현장접수처에 비치) -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1월 1일부터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	- 접수장소